
제3차 제1기 전국위원회

2025년 3월 8일(토)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순서

12 : 00 – 12 : 10 모두발언

12 : 10 – 14 : 00 제3차 전국위원회 회의

회의 및 자료집 순서

모두발언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 지정

회순통과

안건 사항

1. 2025년 사민당 중앙당 예산안
 2. 열린민주당과의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 논의
 3. 사민당 대선 대응 방침
-

보고 사항

1. 2024년 사민당 중앙당 결산
 2. 청년위원회(준) 활동
 3. 당규 제정 TF 진행 상황
-

별첨

1. 사민당 대선 대응 방안
-

참고자료

회의규칙



전국위원 명단

구분	명단
당대표	한창민
부대표	임명희 정혜연
당 소속 국회의원	(한창민)
광역 시도당위원장	(임명희) 송치용 김진호 (최혜선) (정혜연) 박형규(*지역 가나다순)
사무총장	김보경
<hr/>	
권역	전국위원
강원(2)	김덕기 조영진
경기인천(2)	김창희 서정범
대전충청세종(3)	목진오 이훈 최혜선
서울(3)	송성준 이병은 고석군
영남(2)	국민수 최영규
호남제주(2)	박봉리 이수현
<hr/>	
지명직 전국위원(2)	강점석 박환수
<hr/>	
합계	23명

보고 사항

1. 2024년 사민당 중앙당 결산
2. 청년위원회(준) 활동
3. 당규 제정 TF 진행 상황

안건 사항

1. 2025년 사민당 중앙당 예산안
 2. 열린민주당과의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 논의
 3. 사민당 대선 대응 방침
-

[안건 1] 2025년 시민당 중앙당 예산안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제출된 2025년 중앙당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5.
6.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7. ...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2025년 시민당 중앙당 예산안 의결의 건

1) 취지

- 2025년 예산 계획으로 당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경과

- 2024.2.15. 창당 후 2024.12.31.까지의 결산을 보고함.
- 2024년 예산과 결산을 분기별로 예산결산위원회가 검토하여 감사의견서를 작성함.
예결산 검토 자료와 감사의견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함.
- 2024년 예결위의 감사의견서를 반영하여 2025년 예산안을 작성함.

3) 2025년 사민당 중앙당 예산안

예산과목	예산액(원)	비고
[이월금]	16,984,334	*2024년도 결산 후 이월금
[당비]	170,000,000	
일반당비	70,000,000	*작년과 유사한 기준
특별당비	75,000,000	*한 달에 625만원 특별당비 기준
직책당비	25,000,000	*한 달에 총 약 200만원으로 증가 계획
[기탁금]	-	*2025년도 당내 선거 없음
[후원금]	50,000,000	*작년 대비 1,200만원 증가 목표
[보조금]	85,300,000	
경상보조금	35,000,000	*분기당 평균 875만원 예상
선관위기탁금	300,000	*정당을 후원할 수 없는 시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을 나눠주는 정당보조금의 종류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50,000,000	*상반기 정책개발비 2,500만원 기준
[기타수입]	1,000,000	
이자수입	20,000	
환불금	980,000	
수 입 합 계	306,300,000	
수 입 합 계 + 이월금	323,284,334	
[기본경비]	144,610,000	
인건비-상근자급여	100,000,000	*2명 유지 기준
인건비-비상근자급여	18,000,000	*3명 유지 기준
인건비-단기용역	2,000,000	
인건비-세금	610,000	
인건비-복리후생비	0	
비품구입비	1,000,000	
소모품비	800,000	
사무실 보증금	0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임차료와 관리비	14,400,000	
사무소 유지비	5,500,000	
차량유지비	0	
통신요금	1,200,000	
우편 및 운송료	300,000	
당비자동이체수수료	800,000	
[정치활동비]	134,400,000	
정책연구소 지원금	11,000,000	*정당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만 사용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50,000,000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수입 모두 사용
연구용역비	0	
교육사업비	2,400,000	*의무 교육 사업 시행 예상
조직활동비-간담회비용	3,600,000	*한 달에 최대 30만원 지출 예상(기자 포함)
조직활동비-출장비	2,000,000	
조직활동비-업무지도비	400,000	
조직활동비-연대사업비	9,000,000	
조직사업비-당원소통	8,000,000	*당내선거가 없으므로 문자비용 28% 감소
조직사업비-현수막	10,000,000	*현수막 예산 약 2배 증가
당내선거비용	0	*당내선거가 없으므로 약 1900만원 -> 0원
홍보비	6,000,000	*홍보 강화, 약 2.4배 예산 증가
여성정치발전비-기본경비	0	
여성정치발전비-정책개발비	3,500,000	*정당보조금의 10%는 여성정치발전비로만 사용
여성정치발전비-총선지원금	0	
여성정치발전비-조직활동비	0	
청년정치발전비-기본경비	0	
청년정치발전비-정책개발비	0	
청년정치발전비-총선지원금	0	
청년정치발전비-조직활동비	1,800,000	*정당보조금의 5%는 청년정치발전비로만 사용
지원금-지역교부금	26,400,000	*한 달에 약 220만원 지급 예상

지원금-지역교부금 외	0	
[기타]	300,000	
[퇴직적립금]	20,000,000	*예결위 의견 반영. 퇴직금 적립 예정.
[예비비]	1,000,000	
지출합계	300,010,000	
잔액	23,274,334	*잔액은 자동으로 내년도 이월금

4) 비교

- 대선 관련 예산을 책정되어 있지 않음.
- 당원 증가 및 당비 확대 방안 필요. 특당비 의존 구조 탈피 필요.

[안건 2] 열린민주당과의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 논의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열린민주당과의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의 건을 논의해주시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9.

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1. 열린민주당과의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 논의의 건

1) 취지

- 24.3.4. <새진보연합 선거연합 방침에 따른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동후보 추천 합의문>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을 논의하고자 함.

2) 경과

- 24.3.4.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동후보 추천 합의문>과 이에 따른 <양해각서>을 체결함.

-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동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좌진 2인을 추천 받은 후 채용함.

- 이후 공동의정활동 부재 및 정세 변화에 따른 의원실 보좌진 구성 전면 개편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좌진 2인을 면직하고, 양당 지도부가 보좌진 재추천과 합당 추진 여부를 논의함.

- 열린민주당 대의원총회를 통해 보좌진 추천과 합당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함.

[안건 3] 시민당 대선 대응 방침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제출된 시민당 대선 대응 방침을 논의하여 의결해주시요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9.

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1. 시민당 대선 대응 방침 논의의 건

1) 취지

-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진행될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시민당의 대응 방침을 개헌 의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대선 시기에 맞게 당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2) 경과

- 25.3.3. 제5차 제1기 대표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헌 의제를 포함하여 시민당 대선 대응 방침을 논의 안건으로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전원 동의 의결함.

※ 회의자료 <별첨 1.>로 올림.

보고 1

2024년 사민당 중앙당 결산 보고

○ 취지 : 창당 후 2024년도 중앙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결산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함.

○ 기간 : 2024년 2월 15일(창당일) ~ 12월 31일

○ 보조금의 종류

1) 경상보조금

-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약 850만원
- 지급일자 : 2월, 5월, 8월, 11월 중순
-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에 따라 30% 이상 정책연구소, 10% 이상 시·도당에 배분,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5% 이상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함.

2) 선거보조금

-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 사회민주당은 2024년 선거를 치르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조금은 없음

3) 선관위기탁금

- 정당을 후원할 수 없는 시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을 정당에 배분하는 금액으로 약 25,000원
- 지급일자 : 1월, 4월, 7월, 10월 중순

※ 결산자료의 상세내역은 비교란에 기재함.

○ 2024년도 사민당 결산 총괄표

결산과목	집행액(원)	비고
[이월금]	22,071,210	*창준위 이월금
[당비]	139,367,024	
일반당비	66,407,024	*주권당원 수 평균 750명. 월 평균 당비 약 600만원, 현재는 약 520만원
특별당비	68,340,000	*5,000만원(한창민), 700만원(정혜연), 500만원(김보경), 100만원(문성호), 50만원(신광수) 등
직책당비	4,620,000	*보좌진, 당직자(임명희, 위선희)들의 당비

[기탁금]	10,850,000	*당내 선거 후보들이 낸 기탁금
[후원금]	38,307,040	
[보조금]	50,470,030	
경상보조금	17,348,980	
선관위기탁금	51,050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33,070,000	*정책개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액
[기타수입]	3,281,792	
이자수입	11,972	
환불금	3,269,820	*온라인투표업체 계약 취소 환불(1,485,000) *유튜브 촬영 취소로 대관비 환불(198,000) *기후정의동맹 가입 보류로 분담금환불(30만원) *유류비환불(45만원), 간담회물품환불(90,020원) *그 외 금액: 기차표 취소 환불
수 입 합 계	242,275,886	
수 입 합 계 + 이월금	264,347,096	
[기본경비]	111,726,196	
인건비-상근자급여	50,375,320	*갑근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비용 포함
인건비-비상근자급여	24,793,500	*3~5명의 비상근자 인건비(1인 50만원)
인건비-단기용역	5,855,200	*라이브생중계팀인건비(88만원) *홈페이지 추가 개발 인건비(200만원) *토론회 발제비 등
인건비-복리후생비	0	
비품구입비	0	
소모품비	716,640	*사무용품, 도장, 프린터토너, 집회물품 등
사무실 보증금	5,754,500	
임차료와 관리비	17,543,606	*사무실 이사, 중개보수비용 957,725원 포함 *3월~4월 : 한 달에 약 225만원 *5월~11월 : 약 156만원

사무소 유지비	5,158,910	*홈페이지 서버 이용비 한 달에 약 20만원 *웹팩스, 줌 사용료 한 달에 약 6만원 *세무사회계법인 한 달에 약 20만원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55만원 *전자탈당신고서업체 계약연장 약 33만원 *구글드라이브 사용료, 금융결제원 요금, 인증서 수수료 등
차량유지비	0	
통신요금	505,800	*5월~12월, 한 달에 약 6만원 지출
우편 및 운송료	325,240	*등기 발송, 배지&키링 배송비
당비자동이체수수료	697,480	*CMS 사용료, 수수료 포함
[정치활동비]	128,841,966	
정책연구소 지원금	5,250,000	*의무 지출 금액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30,162,840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
연구용역비	0	
교육사업비	365,300	*기본소득 가을학교 공동주최 강의로 1회 지급
조직활동비-간담회비용	1,496,900	*토론회 다과비용, 전국위원회 점심, 연석회의 식비, 기자간담회 등
조직활동비-출장비	2,576,400	*실제 출장비 지출은 1,159,300원 *141만원은 취소한 금액, 환불금 다시 들어옴.
조직활동비-업무지도비	365,500	*회계실무교육 대관료 165,000원 *메세지교육비 20만원
조직활동비-연대사업비	9,318,263	*근조기, 화환, 꽃바구니, 쌀화환 등 *기자회견 현수막, 판넬, 피켓, 백드롭 등 *시도당 깃발, 집회용 깃발, 홍보물 등 제작 *집회 분담금
조직사업비-당원소통	9,874,194	*문자발송비용 *조끼, 키링, 배지, 스티커, 컵 굿즈 등 제작 *대표단, 전국위원 점자 명함 제작 *당원가입서 인쇄 비용
조직사업비-현수막	4,709,300	
당내선거비용	19,407,100	*ARS 투표업체 계약(3회) 약 715만원 *온라인 투표업체 계약(3회) 약 1,022만원 *후보자토론회 현수막 등 제작 비용 *토론회 대관료
홍보비	2,490,069	*4월(페이스북) 약 170만원 *6~8월(페이스북) 약 51만원 *10~12월(페이스북) 약 27만원

여성정치발전비-기본경비	0	
여성정치발전비-정책개발비	1,642,100	*여성정책연구용역비
여성정치발전비-총선지원금	0	
여성정치발전비-조직활동비	0	
청년정치발전비-기본경비	0	
청년정치발전비-정책개발비	0	
청년정치발전비-총선지원금	0	
청년정치발전비-조직활동비	901,500	*청년위(준) 토론회 발제 비용
지원금-지역교부금	40,282,500	*3월 약 1,691만원 (교부금 비율 7:3) *4월 약 489만원 *5월 약 309만원 *6월 약 351만원 *7월 약 84만원 *8월 약 82만원 *9월 약 302만원 *10월 약 227만원 (교부금 비율 5:5로 조정) *11월 약 300만원 *12월 약 192만원
지원금-지역교부금 외	0	
[기타]	6,794,600	
당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2,310,500	
당원관리시스템-홈페이지 연동개발비용	3,410,500	
정책연구소 법원등기 법무사 계약비용	1,050,500	
기타	23,100	*창당 후 계좌명칭 변경 수수료 *기차표 환불 수수료
[퇴직적립금]	0	
[예비비]	0	
247,362,762	247,362,762	
잔 액	16,984,334	*잔액은 자동으로 내년도 이월금

2024년도 2/4분기 (2월15일~6월30일)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심의 의견서

1. 검토근거: ‘당헌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와 제41조(예산과 결산의 회계)’에 근거하여 2024년 2/4분기 (2월15일~6월30일) 회계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 감사시기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 피감기관 : 중앙당
4. 감사방법 : 수입/지출내역 자료 검토 및 회계 실무자(김보경(사무총장), 위선희) 면담
5. 검토자 : 예산결산위원 송명호(위원장), 박명준, 박봉리
6. 검토 의견
 - ① 지역교부금 비율 조정 필요(총 수입 대비 42.4%)

이월금을 제외한 2분기 총 수입은 66,939,915원입니다. 그 중 28,404,500원이 지역교부금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이는 42.4%의 비중으로 수입의 절반 정도가 지역으로 교부되는데 지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중앙당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분 비율을 일정 기간(시도당과의 협의) 중앙당 60% : 시도당 40% 조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 ③ 상근자 인건비 증가 우려

2분기까지는 인건비가 크게 지출되지 않았지만 3분기부터는 중앙당에서 상근자로 근무할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을 증가시킬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사회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 명 호(직인생략)

2024년도 3/4분기 (7월1일~9월30일)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심의 의견서

1. 검토근거: ‘당헌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와 제41조(예산과 결산의 회계)’에 근거하여 2024년 3/4분기 (7월1일~9월30일) 회계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 감사시기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 피감기관 : 중앙당
4. 감사방법 : 수입/지출내역 자료 검토 및 회계 실무자(김보경(사무총장), 위선희) 면담
5. 검토자 : 예산결산위원 송명호(위원장), 박명준, 박봉리
6. 검토 의견

① 지역교부금 비율 조정 필요(총 수입 대비 8.9%)

2/4분기와는 달리 3/4분기에서 지역교부금은 매우 적습니다. 당 살림을 위해 각 시도당이 자발적으로 지역교부금 수령을 보류했다지만 지역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와 같은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분 비율을 일정 기간(시도당과의 협의) 중앙당 60% : 시도당 40% 조정 의견을 제시하며 시도당 운영을 위해 합의된 배분 비율을 지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③ 조직사업비-정당현수막, 홍보비 집행율 저조

조직사업비-정당현수막은 예산액 1,5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290,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비 또한 예산액이 크지 않은 600,000원이었음에도 집행액이 308,864원으로 집행율이 51%입니다. 정당현수막이나 홍보비 등은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활동 사업이니 예산도 늘리고 집행도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사회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 명 호(직인생략)

2024년도 4/4분기 (10월1일~12월31일)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확인검사결과

1. 검토근거: ‘당헌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와 제41조(예산과 결산의 회계)’에 근거하여 2024년 4/4분기 (10월1일~12월31일) 회계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2. 감사시기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 피감기관 : 중앙당
4. 감사방법 : 수입/지출내역 자료 검토 및 회계 실무자(김보경(사무총장), 위선희) 면담
5. 검토자 : 예산결산위원 송명호(위원장), 박명준, 박봉리
6. 검토 의견

① 수입/지출 집행 과정의 절차 및 결재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등에 의해 필요에 의해 지출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법인카드와 통장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결과에 문제는 없지만 지출에 대한 결정 과정이나 집행의 과정에 책임이 필요한 결재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② 퇴직적립금 집행 요청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2명의 상근자가 중앙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퇴직적립금 내역이 없습니다. 추후에 당직자가 퇴직할 경우 당이 부담해야할 퇴직금의 액수가 클 수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집행이 필요합니다.

③ 원천세에 대한 선관위 및 정당 회계전문가의 자문 필요

갑종근로소득세, 사업비지출에 대한 원천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의료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등 원천세에 대한 처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2025년 2월 13일

사회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 명 호

[조직 현황]

1. 청년위원회(준) 운영위원회 구성 : 송성준(위원장), 서정범, 이수현, 채영민, 양윤찬, 조찬우
2. 청년위원회 준비위원 모집 : 현재 총 39명 모집 (서울 10명/ 경기 16명/ 강원 2명/ 제주 2명/ 부산 3명/ 인천 2명/ 울산 1명/ 경북 1명/ 광주 1명/ 충남 1명)
3. 준비위원 활동팀 구성(온라인홍보팀/ 정책연구팀/ 조직팀)

[주요 사업]

1. 교육

- 청년위원회 당원-준비위원 간담회 <WELCOME TO NEXT> (2025년 1월 10일) : 사무총장 당원 교육 및 청년위원장 워크숍 진행

2. 논평,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규탄 및 국민의힘 탄핵안 부결 당론 변경 촉구 기자회견 (2024년 12월 6일)
- 야4당(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대학생 공동성명 기자회견 (미디어스 외) (2024년 12월 6일)
-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5.18의 친구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논평 (오마이뉴스) (2024년 12월 18일)
- <치안이 좋은 광장에 이준석 의원은 왜 안 나오니까> 논평 기자회견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청년혁명을 만들어갑시다> 신년 논평 (2025년 1월 1일)
- <언제까지 병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셈입니까> 논평 (2025년 1월 3일)
-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국힘, 청년이 해산시킵시다> 논평 (오마이뉴스) (2025년 1월 9일)
-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데, 자유를 줄이는 방식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논평 (2025년 1월 13일)

- <박종철 열사 38주기를 추모합니다> SNS 메시지 (2025년 1월 14일)
- <2025년, 새 공화국으로 나아갑시다> 설날 논평 (2025년 1월 29일)
- <지금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도입할 때입니다> 논평 (2025년 2월 4일)

3. 연대활동

- 1)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참석
- 2)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가입 및 매주 토요일 집회 참석 (담당 : 조찬우 조직팀장)
- 3) 그 외 세종호텔 등 투쟁 현장 연대 활동
- 4) 타 당 연대 활동
 - 야당 탄핵 관련 공동 행동 논의를 위한 회의 (2024년 12월 11일)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청년진보당, 기본소득당 청년학생위원회,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준) / 각 청년 조직별 위원장 및 실무 담당자 참석
 - 조국혁신당 쇄빙선정책포럼 <청년 토론회 - 들어라 끈대들아!> 토론회 참석 (송성준) (2025년 2월 14일)

[향후 계획]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위 팀별 활동 및 대선 대응 활동 (온라인홍보/정책연구/조직) - 청년위 내규 제정 등 정식 발족 준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위원 팀별 활동 보고 및 청년위원회 출범식 - 청년위원회 발족

○ 2024. 10. 20. 당헌당규 개정제정 TF 2차 회의

장소 : 사민당 중앙당사

참석자 : 송치용, 강현구, 김보경(직함 생략)

- 당규 제정 일정 재점검

당헌 개정으로 당헌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규 제정 일정을 조정.

10월 26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당헌개정안에 맞추어 당규 제정 작업 병행.

- 당규 제정 논의

당규 목차 점검

당규 관련 주요 이슈 점검

타 유사정당 당규 비교

○ 2024. 12. 당헌 개정 당원투표 진행

○ 2024. 11.~2025. 2. 당규 제정 작업

○ 2025. 3. 4. 제정 규정 등 관련 사무총국 의견 수렴

2025. 3. 4. 오후 1시~3시

장소 : 국회 한창민 의원실

참석자 : 강현구, 김보경, 위선희(직함 생략)

○ 2025년 3월 내 : 당규 초안 작성 예정

사회민주당 회의 규칙

본 규칙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당의 주요 회의에 준용한다.

1. 용어 정의

- 1) '의장'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2) '회의 참가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 개최일 현재 당권이 있고, 직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2. 개최와 폐회

- 1) 회의는 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석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재석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재석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 3)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업무상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 및 당비미납 및 징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단, 회의 개최 전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 4) 의장은 개최 선언을 하기 전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최를 선언한다.
- 5)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6)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 7)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 8)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3. 의제

- 1) 의장은 회의 안건을 5일 전까지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2)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권자 총수의 1%의 서명을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의 당일 안건 발의 또한 5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한다.

3)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 동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1)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자 외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2) 의사진행동의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②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③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번안동의

(1)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동의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3)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3.의제-2>에 해당하는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6) 일자부재의에 따라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발언

- 1)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 2)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 3)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질의에 응답할 때
 -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 (4)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의장이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6. 안건 토의

- 1)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하며, 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 3)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의장단이 제안한 안건의 경우 의장은 제안 설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안 설명의 내용은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 4)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5) 질의 후 토론하며,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 6)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를 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 7)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7. 토론 방식

- 1)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2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2)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
- 3) 복수 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 4)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8. 의결

-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 시스템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3)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4)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와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 5)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 6) 표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 (2)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 (3)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7)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9. 의장단

- 1)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의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 2) 의장단의 판단에 따라 부의장을 전국위원 중 1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10. 회의 결과

- 1)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회의 결과는 5일 이내에 당원에게 공개한다.
- 2)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 및 사무처에서 한다.
- 3)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질서

- 1)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 2)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본 당규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

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 (3) 발언 취소와 사과 :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회의 참가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폭력 등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 3)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끝-